

울진군의료원 직원 채용 공고

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울진군의료원에서 참신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2년 12월 26일

울진군의료원장

1 모집분야 및 업무내용

구분			모집인원	자격요건 및 우대사항	직무
응시분야	응지구분	응시직급			
간호사	정규직	8급	00명	○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	○ 간호사 업무 전반

- 보수기준 : 월급제(내부규정에 따름)
 - ※ 초과근무수당, 효도휴가비 등은 별도
- 근무처 : 울진군의료원, 요양병원, 공공산후조리원
 - ※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및 근무부서는 변동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는 의료원 사정에 의해 순환근무 및 타 직무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

2 응시자격요건

가. 공통요건(인정기준일 :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)

나. 응시자격

- 해당업무 면허증 소지자
- 응시연령 : 만60세 이하(단, 임시직은 만65세 이하)
- 남자 지원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

다. 결격사유

- 울진군의료원 인사규정 제13조, 지방공무원법 제31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3 전형절차 및 전형비율

가. 면접전형 / 전형비율100%

- 인품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,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.
- 면접 평가방법 및 기준

구 분	내 용
평가방법	• 블라인드 면접 실시
평가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가요소별 배점(15점 만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(3점) - 의료원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(3점) -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(3점) - 예의·품행 및 성실성(3점) - 창의력·의지력 발전가능성(3점)

나. 신체검사 : 면접합격자에 한함(불합격 판정일 경우 최종 합격자 취소)

다. 가점사항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(5~10%)

4 제출서류

- ① 응시원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부 (본원 소정양식-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)
- ② 면허(자격)증 사본 1부. (소지자 한함)
- ③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. (해당자에 한함)
-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
- ⑤ 공정채용 서약서 1부.
- ⑥ 코로나예방접종 증명서 1부.

<증명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>

- 채용전형에 필요없는 개인정보(본적, 주민등록번호 등)와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(정치성향, 종교, 가족사항, 신체정보 등)는 각종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.
- 증빙서류(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)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으시거나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

5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

- 응시원서 접수 : 2023. 1. 2.부터 채용 시까지
- 면접일정 : 응시접수 후 일정 결정(개별 유선통보)
 - 접수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(토,일요일 접수불가)
 -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:30~17:30(12:30~13:30제외)내에만 접수 가능하고, 우편접수는 마감일 17: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
 - 접수장소 :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71, 울진군의료원 기획관리팀 인사담당

6 채용서류 반환 요청

- 불합격자의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요청기간은 최종 합격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30일 이내로 한다.
<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> 제 2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다.
<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>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 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다.
- 반환 청구 방법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(054-785-7020)로 제출.

7 기타사항

- 불합격자의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요청기간은 최종 합격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30일 이내로 한다.
<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> 제 2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다.
<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>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 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다.
- 반환 청구 방법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(054-785-7020)로 제출.

8 기 타

- 가.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나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자격(면허)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다.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것이 판명될 경우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

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합격 결정을 취소 및 계약 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- 라.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임용예정자 인원의 3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하며,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합격자(예비합격자 중 고득점 순)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마. 신규직원 선발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적임자가 없을 시,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바. 불합격자 중 채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 의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(054-785-7020)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사. 보건복지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라 2021.11.10.(수) 발표한 “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”에 의거 코로나 19 백신예방접종 미완료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리팀(☎054-785-701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